

의안번호	2216701
의 퇴 인	김현정의원
회 답 일	2026.6.17.
추계번호	26D0767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의4(부동산감독원 직원)	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부동산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「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별표 1의 각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 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의4(부동산감독원 직원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및 직무범위 신설(안 제7조의4)
 -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부동산감독원장이 추천하고,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「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별표 1의 각 법률에 규정된

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,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 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,

- 사법경찰관리 직무교육 실시, 수사·증거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 및 특별사법 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에게 수사활동비가 지급되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다만, 부동산감독원 직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직원의 규모, 수사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및 수사활동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지식재산처는 2026년 예산 기준 “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·단속 지원 사업”에 63억 6,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,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(10억원), 부정 경쟁행위 단속지원(44억 7,300만원),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 운영(2억 1,200만원),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(6억 8,200만원)을 집행하고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nabo.go.kr